|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49호《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이 2011년 6월 30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2011년 6월 30일 **제1장 총 칙****제1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실시를 규율하고 행정기관의 법적 직무수행을 보장 및 감독하고 공민의 이익보장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 이 법을 제정한다.**제2조** 이 법에서 지칭하는 행정강제에는 행정 강제조치와 행정 강제집행이 포함된다.행정 강제조치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제지, 증거훼손 방지, 위해발생 피면, 위험확대 통제 등의 상황을 위해 법에 따라 공민의 인신자유를 당분간 제한하거나 또는 공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재물을 임시 통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행정 강제집행이라 함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행정적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제3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실시는 이 법을 준용한다.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보건 사건 또는 사회안전 사건 등의 돌발사건이 발생하거나 장차 발생할 수 있어 행정기관이 응급조치나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행정기관이 금융업 신중성 감독관리 조치나 출입국 화물에 대해 강제적 기술모니터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제4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실시는 법정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5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실시는 적당하여야 한다. 비 강제수단으로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강제를 설정, 실시하지 아니한다.**제6조** 행정강제를 실시 시에는 교육과 강제를 서로 결부시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7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은 행정강제권을 이용하여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행정강제 실시에 대한 진술권, 변호권을 가지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불법 행정강제 실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의 강제집행 중의 불법행위 또는 강제집행 범위 확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장 행정강제의 종류와 설정****제9조** 행정 강제조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1) 공민의 인신자유 단속(2)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봉인(3) 재물을 압류(4) 예금, 송금을 동결(5) 기타의 행정 강제조치.**제10조** 행정 강제조치는 법률에 의해 설정된다.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나 국무원 행정관리 직권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법규로 이 법 제9조 (1)호, (4)호와 마땅히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행정 강제조치 그 밖의 기타 행정 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법률, 행정법규에 제정되지 않은 지방성 사무는 지방성 법규로 이 법 제9조 (2)호, (3)호의 행정 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법률, 법규 그 밖의 기타 규범성 문건은 행정 강제조치를 설정하지 못한다.**제11조** 법률이 행정 강제조치의 대상, 조건, 종류를 규정한 경우 행정법규, 지방 법규는 확대하여 규정하지 못한다.법률에 행정 강제조치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는 행정 강제조치를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이 특정 사항은 행정법규로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규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행정법규는 이 법 제9조 (1)호, (4)호와 마땅히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행정 강제조치 그 밖의 기타 행정 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제12조** 행정 강제집행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1) 벌금이나 체납금 부과(2) 예금, 송금 이체(3) 봉인, 압류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4) 장애 제거, 원상복구(5) 대위 이행(6) 기타의 강제집행 방식.**제13조** 행정 강제집행은 법률에 의해 설정된다.법률이 행정기관의 강제집행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법률 초안, 법규 초안에서 행정강제를 설정하는 경우 기안단위는 공청회, 논증회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정기관에 당해 행정강제의 설정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의견 수렴 및 수용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제15조** 행정강제 설정기관은 정기적으로 그가 설정한 행정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행정강제에 대해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행정강제 실시기관은 이미 설정된 행정강제의 실시상황과 존재 필요성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평가를 실시하여 그 의견을 당해 행정강제 설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 설정기관과 실시기관에 행정강제의 설정과 실시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유관기관은 열심히 검토, 논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회신을 하여야 한다.**제3장 행정 강제조치의 실시절차****제1절 일반 규정****제16조** 행정기관은 행정관리 직책을 수행할 때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 강제조치를 실시한다.불법행위 사안이 경미하거나 뚜렷한 사회적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 강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7조** 행정 강제조치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그 법정 권한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조치는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행정처벌권과 관련되는 행정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행정 강제조치는 행정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행정 법 집행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가타 인원은 실시하지 못한다.**제18조** 행정기관의 행정 강제조치 실시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시하기 전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 2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요원이 실시하여야 한다.(3) 집무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4)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5)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조치를 취하는 이유, 의거, 그리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 구제도경을 직접 알려주어야 한다.(6)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를 들어야 한다.(7) 현장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8) 현장기록은 당사자와 행정 법 집행요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록에 관련 상황을 밝혀야 한다.(9)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을 현장에 요청하여 증인과 행정 법 집행요원이 현장기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10)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절차.**제19조** 긴급한 상황에서 당장에서 행정 강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 법 집행요원은 마땅히 24시간 내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수속을 보완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행정 강제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제20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인신자유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 강제조치는 이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그 밖에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장에서 고지하거나 또는 행정 강제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당사자 가족에게 행정 강제조치를 실시한 행정기관, 장소 및 기한을 고지하여야 한다.(2) 긴급 상황에서는 당장에서 행정 강제조치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에 돌아온 후 즉시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수속을 보완하여야 한다.(3) 법률이 규정한 기타 절차.인신자유를 단속하는 행정 강제조치 기간은 법정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조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제21조** 불법행위가 범죄용의가 있어 사법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봉인, 압류, 동결한 재물을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제2절 봉인, 압류****제22조** 봉인, 압류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조직에서 실시할 수 없다.**제23조** 봉인, 압류는 사건과 관련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재물에 국한되며 불법행위와 무관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봉인, 압류하지 못하며, 공민 개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필수품을 봉인, 압류하지 못한다.당자사의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이 이미 기타 국가기관에 의해 의법 봉인된 경우에는 중복 봉인하지 못한다.**제24조** 행정기관이 봉인, 압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봉인, 압류 결정서와 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봉인, 압류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2) 봉인, 압류 이유, 의거 및 기한(3) 봉인, 압류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의 명칭, 수량 등(4)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도경과 기한(5) 행정기관의 명칭, 직인 및 일자.봉인, 압류리스트는 1식 2부로서 당사자와 행정기관이 각기 보존한다.**제25조** 봉인, 압류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봉인, 압류 연장 결정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물품에 대한 검측,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봉인, 압류 기간에 검측,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검측,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기간은 명확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검측,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한다.**제26조** 행정기관은 봉인, 압류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행정기관은 봉인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이를 훼손하거나 제멋대로 전이, 처분하지 못한다.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선행 배상한 후 제3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봉인, 압류로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한다.**제27조** 행정기관은 봉인, 압류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사실을 규명하고 이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법사실이 분명하고 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하는 불법재물은 몰수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소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소각하며, 봉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봉인, 압류 해제결정을 내려야 한다.**제2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봉인, 압류 해제결정을 내려야 한다.(1) 당사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2) 봉인, 압류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이 불법행위와 무관한 경우(3) 행정기관에서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결정을 내려 봉인, 압류가 필요 없는 경우(4) 봉인, 압류기한이 만료된 경우(5) 봉인, 압류조치가 필요 없는 기타의 상황.봉인, 압류를 해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재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선하고 생생한 물품이나 기타 보관하기 어려운 재물을 경매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경매 또는 매각 소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아 당사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제3절 동 결****제29조** 예금, 송금의 동결은 법률이 규정한 행정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기관이나 조직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조직은 예금, 송금을 동결하지 못한다.동결하는 예금, 송금 액수는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금액에 상당하여야 한다. 이미 기타 국가기관에 의해 동결된 경우에는 중복 동결하지 못한다.**제30조** 행정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예금, 송금 동결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법 제18조 제(1)호, (2)호, (3)호, (7)호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금융기관에 동결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금융기관은 행정기관의 의법 동결통지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동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체해서는 아니된다. 동결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피로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이 규정한 그 밖의 행정기관이나 조직이 당사자의 예금, 송금 동결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마땅히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제31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예금, 송금을 동결하는 경우 동결을 결정한 행정기관은 마땅히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동결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결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2) 동결 이유, 의거 및 기간(3) 동결 계좌와 금액(4)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도경과 기한(5) 행정기관의 명칭, 직인 및 일자.**제32조** 예금, 송금을 동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은 처리결정을 내리거나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을 30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동결 연장 결정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33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동결 해제결정을 내려야 한다.(1) 당사자가 불법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2) 동결한 예금, 송금이 불법행위와 무관한 경우(3) 행정기관이 이미 불법행위에 대해 처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동결이 불필요한 경우(4) 동결기한이 만료된 경우(5) 동결조치가 필요 없는 기타의 상황.행정기관이 동결 해제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동결을 해제하여야 한다.행정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처리결정 또는 동결 해제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관은 동결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동결을 해제하여야 한다.**제4장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절차****제1절 일반 규정****제34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 집행권을 향유하는 행정기관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한다.**제35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는 서면으로 하고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의무 이행기한(2) 의무 이행방식(3) 금전지급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금액과 지급방식을 기재(4)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권과 변호권.**제36조** 당사자는 최고서를 받은 후 진술 또는 변호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해 기록, 심사 대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제37조** 최고를 하였으나 당사자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결정을 내릴 수 있다.강제 집행결정은 서면으로 내리고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2) 강제집행의 이유와 의거(3) 강제집행의 방식과 일시(4)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도경과 기한(5) 행정기관의 명칭, 직인 및 일자.최고기간에 재물 전이 또는 은닉기미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바로 강제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제38조** 최고서, 행정 강제집행 결정서는 직접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제3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당사자가 행정결정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잠시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2) 제3자가 집행 표적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고 또한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3) 집행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빚어낼 수 있고 또한 집행 중지가 공공이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경우(4) 행정기관이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집행 중지상황이 소실된 후 행정기관은 집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뚜렷한 사회적 위해가 없거나 당사자가 이행능력이 없어 집행을 만 3년 중지 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다.**제4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종결한다.(1) 공민이 사망하였으나 집행할 자산이 없고 의무 승계자도 없는 경우(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후 집행할 재산이 없고 의무 승계자도 없는 경우(3) 집행 표적이 멸실된 경우(4) 집행 행정결정이 취소된 경우(5) 행정기관이 집행을 종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제41조**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 후 집행 행정결정이 취소, 변경되거나 또는 집행 오류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재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재물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제42조** 행정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행정기관은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집행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 집행합의는 단계별 이행을 약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추가 벌금 또는 체납금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집행합의는 마땅히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집행을 회복하여야 한다.**제43조** 행정기관은 야간 또는 법정휴일에 행정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행정기관은 거주민 생활에 대한 급수, 공전, 난방, 가스제공 등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관련 행정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제44조** 불법 건축물, 구조물, 시설 등에 대한 강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방식을 취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기한부 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철거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 철거시킬 수 있다.**제2절 금전 지급의무의 집행****제45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금전 지급의무와 관련한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 또는 체납금 지급 처벌을 가한다. 벌금 또는 체납금 지급 기준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벌금 또는 체납금 지급 액수는 금전 지급의무 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제46조** 행정기관이 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체납금 지급을 실시하여 30일이 지난 후 당사자에게 최고를 하여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 강제집행권을 향유하는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행정기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봉인, 압류, 동결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행정 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최고를 하여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봉인, 압류조치를 취한 행정기관은 봉인, 압류한 재물을 법에 따라 경매하여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제47조** 예금, 송금의 이체는 법률이 규정한 행정기관이 결정하고 서면으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예금, 송금 이체 결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체하여야 한다.법률이 규정한 그 밖의 행정기관 또는 조직이 당사자의 예금, 송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마땅히 거부하여야 한다.**제48조** 법에 따라 재물을 경매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경매기구에 위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49조** 이체한 예금, 송금, 그리고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한 소득은 국고에 상납하거나 특별 재정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개인도 그 어떠한 형식으로 억류, 착복하거나 또는 형태를 바꾸어 착복해서는 아니된다.**제3절 대위 이행****제50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장애제거, 원상회복 등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해를 주거나 환경오염을 빚어내거나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대위 이행을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위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제51조** 대위 이행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위 이행을 하기 전에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대위 이행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대위 이행 이유와 의거, 방식과 일시, 표적, 비용예산 및 대위 이행인을 기재하여야 한다.(2) 대위 이행을 하는 3일 전에 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행한 경우에는 대위 이행을 중지시킨다.(3) 대위 이행 시 행정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요원을 파견하여 현장 감독하여야 한다.대위 이행을 완료한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두 업무요원, 대위 이행인 및 당사자 또는 증인은 집행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대위 이행 비용은 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대위 이행은 폭력, 협박 또는 기타의 불법방식을 취하지 못한다.**제52조** 도로, 수로, 항로 또는 공공장소의 잔류물, 장애물 또는 오염물을 바로 제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대위 이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은 사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5장 인민법원의 강제집행 신청****제53조**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결정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 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54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마땅히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서를 송달한 10일 후 당사자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은 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제55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강제집행 신청서(2) 행정결정서 및 결정을 내리게 된 사실, 이유 및 의거(3) 당사자의 의견 및 행정기관의 최고 상황(4) 강제집행을 신청한 표적의 상황(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자료.강제집행 신청서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행정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제56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강제집행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불수리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제57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서면 강제집행 신청을 심사하고 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그 행정결정이 법정 집행효력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하고 수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을 재정하여야 한다.**제5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을 하기 전에 집행대상자와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사실근거가 부족한 경우(2) 법률, 법규 근거가 부족한 경우(3) 불법 또는 집행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기타 상황.인민법원은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집행하지 않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5일 이내에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재정을 행정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불집행 재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제59조**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 원장의 승인을 얻고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제60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시에는 신청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의 비용은 집행대상자가 부담한다.인민법원이 이체, 경매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체, 경매 후 강제집행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물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경매기구에 의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이체한 예금, 송금, 그리고 경매 또는 법에 따라 처분한 소득은 국고에 상납하거나 특별 재정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 제멋대로 억류, 착복하거나 형태를 바꾸어 착복해서는 아니된다.**제6장 법률적 책임****제61조** 행정기관이 행정강제를 실시할 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유관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직적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을 처분한다.(1) 법률, 법규 의거가 없는 경우(2) 행정강제 대상, 조건, 방식을 변경한 경우(3) 법정절차를 어기고 행정강제를 실시한 경우(4)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야간 또는 법정휴일에 행정 강제집행을 실시한 경우 (5) 거주민 생활에 대한 급수, 공전, 난방, 가스공급 등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관련 행정결정을 이행하도록 당사자를 강요한 경우(6) 법을 어기고 행정강제를 실시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제62조** 행정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유관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을 처분한다.(1) 봉인, 압류, 동결범위를 확대시킨 경우(2) 봉인, 압류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사용하거나 훼손시킨 경우(3) 봉인, 압류하는 법정기간에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봉인, 압류를 지체 없이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4) 예금, 송금을 동결하는 기간에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동결을 지체 없이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제63조** 행정기관이 봉인, 압류한 재물 또는 이체한 예금, 송금, 그리고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한 소득을 억류, 착복하거나 형태를 바꾸어 착복한 경우 재정부서 또는 유관부서에서 추징하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게 중대과실 기록, 좌천, 철직 또는 제명 처분을 준다.행정기관의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봉인, 압류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점유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유관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중대과실 기록, 좌천, 철직 또는 제명 처분을 준다.**제64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행정강제권을 이용하여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유관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을 처분한다.**제65조** 금융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있는 경우 금융업감독관리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진 주관인원과 직접적 책임인원을 처분한다.(1) 동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2) 지체 없이 동결, 이체를 해야 하는 예금, 송금을 동결하지 아니하거나 이체하지 않아 예금, 송금의 전이를 초래한 경우(3) 동결, 이체가 불필요한 예금, 송금을 동결하거나 이체한 경우(4) 동결 예금, 송금을 지체 없이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제66조** 금융기관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금액을 국고 또는 재정 특별계좌 그 밖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금융업감독관리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이체 금액의 2배로 벌금을 부과시키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을 처분한다.행정기관, 인민법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기관에 명령하여 금액을 국고 또는 재정 특별계좌 그 밖의 기타 계좌에 이체하도록 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을 처분한다.**제67조** 인민법원 및 그 업무직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중에서 불법행위가 있거나 강제집행 범위를 확대시킨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을 처분한다.**제6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제7장 부 칙****제69조** 이 법에서 10일 이내 기한의 규정이란 근무일을 가리키며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70조** 법률, 행정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춘 조직이 법정 권한범위 내에서 그 자체의 명의로 실시하는 행정강제는 이 법 중 행정기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제71조**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四十九号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于2011年6月30日通过，现予公布，自2012年1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主席　胡锦涛2011年6月30日**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保障和监督行政机关依法履行职责，维护公共利益和社会秩序，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行政强制，包括行政强制措施和行政强制执行。　　行政强制措施，是指行政机关在行政管理过程中，为制止违法行为、防止证据损毁、避免危害发生、控制危险扩大等情形，依法对公民的人身自由实施暂时性限制，或者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财物实施暂时性控制的行为。　　行政强制执行，是指行政机关或者行政机关申请人民法院，对不履行行政决定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强制履行义务的行为。　**第三条**　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适用本法。　　发生或者即将发生自然灾害、事故灾难、公共卫生事件或者社会安全事件等突发事件，行政机关采取应急措施或者临时措施，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行政机关采取金融业审慎监管措施、进出境货物强制性技术监控措施，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四条**　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应当依照法定的权限、范围、条件和程序。　　**第五条**　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应当适当。采用非强制手段可以达到行政管理目的的，不得设定和实施行政强制。　　**第六条**　实施行政强制，应当坚持教育与强制相结合。　　**第七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利用行政强制权为单位或者个人谋取利益。　　**第八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实施行政强制，享有陈述权、申辩权；有权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因行政机关违法实施行政强制受到损害的，有权依法要求赔偿。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因人民法院在强制执行中有违法行为或者扩大强制执行范围受到损害的，有权依法要求赔偿。**第二章　行政强制的种类和设定**　　**第九条**　行政强制措施的种类：　　（一）限制公民人身自由；　　（二）查封场所、设施或者财物；　　（三）扣押财物；　　（四）冻结存款、汇款；　　（五）其他行政强制措施。　　**第十条**　行政强制措施由法律设定。　　尚未制定法律，且属于国务院行政管理职权事项的，行政法规可以设定除本法第九条第一项、第四项和应当由法律规定的行政强制措施以外的其他行政强制措施。　　尚未制定法律、行政法规，且属于地方性事务的，地方性法规可以设定本法第九条第二项、第三项的行政强制措施。　　法律、法规以外的其他规范性文件不得设定行政强制措施。　　**第十一条**　法律对行政强制措施的对象、条件、种类作了规定的，行政法规、地方性法规不得作出扩大规定。　　法律中未设定行政强制措施的，行政法规、地方性法规不得设定行政强制措施。但是，法律规定特定事项由行政法规规定具体管理措施的，行政法规可以设定除本法第九条第一项、第四项和应当由法律规定的行政强制措施以外的其他行政强制措施。　　**第十二条**　行政强制执行的方式：　　（一）加处罚款或者滞纳金；　　（二）划拨存款、汇款；　　（三）拍卖或者依法处理查封、扣押的场所、设施或者财物；　　（四）排除妨碍、恢复原状；　　（五）代履行；　　（六）其他强制执行方式。　　**第十三条**　行政强制执行由法律设定。　　法律没有规定行政机关强制执行的，作出行政决定的行政机关应当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四条**　起草法律草案、法规草案，拟设定行政强制的，起草单位应当采取听证会、论证会等形式听取意见，并向制定机关说明设定该行政强制的必要性、可能产生的影响以及听取和采纳意见的情况。　　**第十五条**　行政强制的设定机关应当定期对其设定的行政强制进行评价，并对不适当的行政强制及时予以修改或者废止。　　行政强制的实施机关可以对已设定的行政强制的实施情况及存在的必要性适时进行评价，并将意见报告该行政强制的设定机关。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行政强制的设定机关和实施机关就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提出意见和建议。有关机关应当认真研究论证，并以适当方式予以反馈。**第三章　行政强制措施实施程序****第一节　一般规定**　　**第十六条**　行政机关履行行政管理职责，依照法律、法规的规定，实施行政强制措施。　　违法行为情节显著轻微或者没有明显社会危害的，可以不采取行政强制措施。　　**第十七条**　行政强制措施由法律、法规规定的行政机关在法定职权范围内实施。行政强制措施权不得委托。　　依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规定行使相对集中行政处罚权的行政机关，可以实施法律、法规规定的与行政处罚权有关的行政强制措施。　　行政强制措施应当由行政机关具备资格的行政执法人员实施，其他人员不得实施。　　**第十八条**　行政机关实施行政强制措施应当遵守下列规定：　　（一）实施前须向行政机关负责人报告并经批准；　　（二）由两名以上行政执法人员实施；　　（三）出示执法身份证件；　　（四）通知当事人到场；　　（五）当场告知当事人采取行政强制措施的理由、依据以及当事人依法享有的权利、救济途径；　　（六）听取当事人的陈述和申辩；　　（七）制作现场笔录；　　（八）现场笔录由当事人和行政执法人员签名或者盖章，当事人拒绝的，在笔录中予以注明；　　（九）当事人不到场的，邀请见证人到场，由见证人和行政执法人员在现场笔录上签名或者盖章；　　（十）法律、法规规定的其他程序。　　**第十九条**　情况紧急，需要当场实施行政强制措施的，行政执法人员应当在二十四小时内向行政机关负责人报告，并补办批准手续。行政机关负责人认为不应当采取行政强制措施的，应当立即解除。　　**第二十条**　依照法律规定实施限制公民人身自由的行政强制措施，除应当履行本法第十八条规定的程序外，还应当遵守下列规定：　　（一）当场告知或者实施行政强制措施后立即通知当事人家属实施行政强制措施的行政机关、地点和期限；　　（二）在紧急情况下当场实施行政强制措施的，在返回行政机关后，立即向行政机关负责人报告并补办批准手续；　　（三）法律规定的其他程序。　　实施限制人身自由的行政强制措施不得超过法定期限。实施行政强制措施的目的已经达到或者条件已经消失，应当立即解除。　**第二十一条**　违法行为涉嫌犯罪应当移送司法机关的，行政机关应当将查封、扣押、冻结的财物一并移送，并书面告知当事人。**第二节　查封、扣押**　　**第二十二条**　查封、扣押应当由法律、法规规定的行政机关实施，其他任何行政机关或者组织不得实施。　　**第二十三条**　查封、扣押限于涉案的场所、设施或者财物，不得查封、扣押与违法行为无关的场所、设施或者财物；不得查封、扣押公民个人及其所扶养家属的生活必需品。　　当事人的场所、设施或者财物已被其他国家机关依法查封的，不得重复查封。　　**第二十四条**　行政机关决定实施查封、扣押的，应当履行本法第十八条规定的程序，制作并当场交付查封、扣押决定书和清单。　　查封、扣押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查封、扣押的理由、依据和期限；　　（三）查封、扣押场所、设施或者财物的名称、数量等；　　（四）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五）行政机关的名称、印章和日期。　　查封、扣押清单一式二份，由当事人和行政机关分别保存。　　**第二十五条**　查封、扣押的期限不得超过三十日；情况复杂的，经行政机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但是延长期限不得超过三十日。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延长查封、扣押的决定应当及时书面告知当事人，并说明理由。　　对物品需要进行检测、检验、检疫或者技术鉴定的，查封、扣押的期间不包括检测、检验、检疫或者技术鉴定的期间。检测、检验、检疫或者技术鉴定的期间应当明确，并书面告知当事人。检测、检验、检疫或者技术鉴定的费用由行政机关承担。　　**第二十六条**　对查封、扣押的场所、设施或者财物，行政机关应当妥善保管，不得使用或者损毁；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对查封的场所、设施或者财物，行政机关可以委托第三人保管，第三人不得损毁或者擅自转移、处置。因第三人的原因造成的损失，行政机关先行赔付后，有权向第三人追偿。　　因查封、扣押发生的保管费用由行政机关承担。　　**第二十七条**　行政机关采取查封、扣押措施后，应当及时查清事实，在本法第二十五条规定的期限内作出处理决定。对违法事实清楚，依法应当没收的非法财物予以没收；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销毁的，依法销毁；应当解除查封、扣押的，作出解除查封、扣押的决定。　　**第二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机关应当及时作出解除查封、扣押决定：　　（一）当事人没有违法行为；　　（二）查封、扣押的场所、设施或者财物与违法行为无关；　　（三）行政机关对违法行为已经作出处理决定，不再需要查封、扣押；　　（四）查封、扣押期限已经届满；　　（五）其他不再需要采取查封、扣押措施的情形。　　解除查封、扣押应当立即退还财物；已将鲜活物品或者其他不易保管的财物拍卖或者变卖的，退还拍卖或者变卖所得款项。变卖价格明显低于市场价格，给当事人造成损失的，应当给予补偿。**第三节　冻 结**　　**第二十九条**　冻结存款、汇款应当由法律规定的行政机关实施，不得委托给其他行政机关或者组织；其他任何行政机关或者组织不得冻结存款、汇款。　　冻结存款、汇款的数额应当与违法行为涉及的金额相当；已被其他国家机关依法冻结的，不得重复冻结。　　**第三十条**　行政机关依照法律规定决定实施冻结存款、汇款的，应当履行本法第十八条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七项规定的程序，并向金融机构交付冻结通知书。　　金融机构接到行政机关依法作出的冻结通知书后，应当立即予以冻结，不得拖延，不得在冻结前向当事人泄露信息。　　法律规定以外的行政机关或者组织要求冻结当事人存款、汇款的，金融机构应当拒绝。　　**第三十一条**　依照法律规定冻结存款、汇款的，作出决定的行政机关应当在三日内向当事人交付冻结决定书。冻结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冻结的理由、依据和期限；　　（三）冻结的账号和数额；　　（四）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五）行政机关的名称、印章和日期。　　**第三十二条**　自冻结存款、汇款之日起三十日内，行政机关应当作出处理决定或者作出解除冻结决定；情况复杂的，经行政机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但是延长期限不得超过三十日。法律另有规定的除外。　　延长冻结的决定应当及时书面告知当事人，并说明理由。　　**第三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机关应当及时作出解除冻结决定：　　（一）当事人没有违法行为；　　（二）冻结的存款、汇款与违法行为无关；　　（三）行政机关对违法行为已经作出处理决定，不再需要冻结；　　（四）冻结期限已经届满；　　（五）其他不再需要采取冻结措施的情形。　　行政机关作出解除冻结决定的，应当及时通知金融机构和当事人。金融机构接到通知后，应当立即解除冻结。　　行政机关逾期未作出处理决定或者解除冻结决定的，金融机构应当自冻结期满之日起解除冻结。**第四章　行政机关强制执行程序****第一节　一般规定**　　**第三十四条**　行政机关依法作出行政决定后，当事人在行政机关决定的期限内不履行义务的，具有行政强制执行权的行政机关依照本章规定强制执行。　　**第三十五条**　行政机关作出强制执行决定前，应当事先催告当事人履行义务。催告应当以书面形式作出，并载明下列事项：　　（一）履行义务的期限；　　（二）履行义务的方式；　　（三）涉及金钱给付的，应当有明确的金额和给付方式；　　（四）当事人依法享有的陈述权和申辩权。　　**第三十六条**　当事人收到催告书后有权进行陈述和申辩。行政机关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意见，对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应当进行记录、复核。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或者证据成立的，行政机关应当采纳。　　**第三十七条**　经催告，当事人逾期仍不履行行政决定，且无正当理由的，行政机关可以作出强制执行决定。　　强制执行决定应当以书面形式作出，并载明下列事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强制执行的理由和依据；　　（三）强制执行的方式和时间；　　（四）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五）行政机关的名称、印章和日期。　　在催告期间，对有证据证明有转移或者隐匿财物迹象的，行政机关可以作出立即强制执行决定。　　**第三十八条**　催告书、行政强制执行决定书应当直接送达当事人。当事人拒绝接收或者无法直接送达当事人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送达。　　**第三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中止执行：　　（一）当事人履行行政决定确有困难或者暂无履行能力的；　　（二）第三人对执行标的主张权利，确有理由的；　　（三）执行可能造成难以弥补的损失，且中止执行不损害公共利益的；　　（四）行政机关认为需要中止执行的其他情形。　　中止执行的情形消失后，行政机关应当恢复执行。对没有明显社会危害，当事人确无能力履行，中止执行满三年未恢复执行的，行政机关不再执行。　　**第四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终结执行：　　（一）公民死亡，无遗产可供执行，又无义务承受人的；　　（二）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无财产可供执行，又无义务承受人的；　　（三）执行标的灭失的；　　（四）据以执行的行政决定被撤销的；　　（五）行政机关认为需要终结执行的其他情形。　　**第四十一条**　在执行中或者执行完毕后，据以执行的行政决定被撤销、变更，或者执行错误的，应当恢复原状或者退还财物；不能恢复原状或者退还财物的，依法给予赔偿。　　**第四十二条**　实施行政强制执行，行政机关可以在不损害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的情况下，与当事人达成执行协议。执行协议可以约定分阶段履行；当事人采取补救措施的，可以减免加处的罚款或者滞纳金。　　执行协议应当履行。当事人不履行执行协议的，行政机关应当恢复强制执行。　　**第四十三条**　行政机关不得在夜间或者法定节假日实施行政强制执行。但是，情况紧急的除外。　　行政机关不得对居民生活采取停止供水、供电、供热、供燃气等方式迫使当事人履行相关行政决定。　　**第四十四条**　对违法的建筑物、构筑物、设施等需要强制拆除的，应当由行政机关予以公告，限期当事人自行拆除。当事人在法定期限内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又不拆除的，行政机关可以依法强制拆除。**第二节　金钱给付义务的执行**　　**第四十五条**　行政机关依法作出金钱给付义务的行政决定，当事人逾期不履行的，行政机关可以依法加处罚款或者滞纳金。加处罚款或者滞纳金的标准应当告知当事人。　　加处罚款或者滞纳金的数额不得超出金钱给付义务的数额。　　**第四十六条**　行政机关依照本法第四十五条规定实施加处罚款或者滞纳金超过三十日，经催告当事人仍不履行的，具有行政强制执行权的行政机关可以强制执行。　　行政机关实施强制执行前，需要采取查封、扣押、冻结措施的，依照本法第三章规定办理。　　没有行政强制执行权的行政机关应当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但是，当事人在法定期限内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经催告仍不履行的，在实施行政管理过程中已经采取查封、扣押措施的行政机关，可以将查封、扣押的财物依法拍卖抵缴罚款。　　**第四十七条**　划拨存款、汇款应当由法律规定的行政机关决定，并书面通知金融机构。金融机构接到行政机关依法作出划拨存款、汇款的决定后，应当立即划拨。　　法律规定以外的行政机关或者组织要求划拨当事人存款、汇款的，金融机构应当拒绝。　　**第四十八条**　依法拍卖财物，由行政机关委托拍卖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拍卖法》的规定办理。　　**第四十九条**　划拨的存款、汇款以及拍卖和依法处理所得的款项应当上缴国库或者划入财政专户。任何行政机关或者个人不得以任何形式截留、私分或者变相私分。**第三节　代履行**　　**第五十条**　行政机关依法作出要求当事人履行排除妨碍、恢复原状等义务的行政决定，当事人逾期不履行，经催告仍不履行，其后果已经或者将危害交通安全、造成环境污染或者破坏自然资源的，行政机关可以代履行，或者委托没有利害关系的第三人代履行。　　**第五十一条**　代履行应当遵守下列规定：　　（一）代履行前送达决定书，代履行决定书应当载明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代履行的理由和依据、方式和时间、标的、费用预算以及代履行人；　　（二）代履行三日前，催告当事人履行，当事人履行的，停止代履行；　　（三）代履行时，作出决定的行政机关应当派员到场监督；　　（四）代履行完毕，行政机关到场监督的工作人员、代履行人和当事人或者见证人应当在执行文书上签名或者盖章。　　代履行的费用按照成本合理确定，由当事人承担。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代履行不得采用暴力、胁迫以及其他非法方式。　　**第五十二条**　需要立即清除道路、河道、航道或者公共场所的遗洒物、障碍物或者污染物，当事人不能清除的，行政机关可以决定立即实施代履行；当事人不在场的，行政机关应当在事后立即通知当事人，并依法作出处理。**第五章　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五十三条**　当事人在法定期限内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又不履行行政决定的，没有行政强制执行权的行政机关可以自期限届满之日起三个月内，依照本章规定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五十四条**　行政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前，应当催告当事人履行义务。催告书送达十日后当事人仍未履行义务的，行政机关可以向所在地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执行对象是不动产的，向不动产所在地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第五十五条**　行政机关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应当提供下列材料：　　（一）强制执行申请书；　　（二）行政决定书及作出决定的事实、理由和依据；　　（三）当事人的意见及行政机关催告情况；　　（四）申请强制执行标的情况；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材料。　　强制执行申请书应当由行政机关负责人签名，加盖行政机关的印章，并注明日期。　　**第五十六条**　人民法院接到行政机关强制执行的申请，应当在五日内受理。　　行政机关对人民法院不予受理的裁定有异议的，可以在十五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上一级人民法院应当自收到复议申请之日起十五日内作出是否受理的裁定。　　**第五十七条**　人民法院对行政机关强制执行的申请进行书面审查，对符合本法第五十五条规定，且行政决定具备法定执行效力的，除本法第五十八条规定的情形外，人民法院应当自受理之日起七日内作出执行裁定。　　**第五十八条**　人民法院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在作出裁定前可以听取被执行人和行政机关的意见：　　（一）明显缺乏事实根据的；　　（二）明显缺乏法律、法规依据的；　　（三）其他明显违法并损害被执行人合法权益的。　　人民法院应当自受理之日起三十日内作出是否执行的裁定。裁定不予执行的，应当说明理由，并在五日内将不予执行的裁定送达行政机关。　　行政机关对人民法院不予执行的裁定有异议的，可以自收到裁定之日起十五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上一级人民法院应当自收到复议申请之日起三十日内作出是否执行的裁定。　　**第五十九条**　因情况紧急，为保障公共安全，行政机关可以申请人民法院立即执行。经人民法院院长批准，人民法院应当自作出执行裁定之日起五日内执行。　　**第六十条**　行政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不缴纳申请费。强制执行的费用由被执行人承担。　　人民法院以划拨、拍卖方式强制执行的，可以在划拨、拍卖后将强制执行的费用扣除。　　依法拍卖财物，由人民法院委托拍卖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拍卖法》的规定办理。　　划拨的存款、汇款以及拍卖和依法处理所得的款项应当上缴国库或者划入财政专户，不得以任何形式截留、私分或者变相私分。**第六章　法律责任**　　**第六十一条**　行政机关实施行政强制，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没有法律、法规依据的；　　（二）改变行政强制对象、条件、方式的；　　（三）违反法定程序实施行政强制的；　　（四）违反本法规定，在夜间或者法定节假日实施行政强制执行的；　　（五）对居民生活采取停止供水、供电、供热、供燃气等方式迫使当事人履行相关行政决定的；　　（六）有其他违法实施行政强制情形的。　　**第六十二条**　违反本法规定，行政机关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扩大查封、扣押、冻结范围的；　　（二）使用或者损毁查封、扣押场所、设施或者财物的；　　（三）在查封、扣押法定期间不作出处理决定或者未依法及时解除查封、扣押的；　　（四）在冻结存款、汇款法定期间不作出处理决定或者未依法及时解除冻结的。　　**第六十三条**　行政机关将查封、扣押的财物或者划拨的存款、汇款以及拍卖和依法处理所得的款项，截留、私分或者变相私分的，由财政部门或者有关部门予以追缴；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大过、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　　行政机关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将查封、扣押的场所、设施或者财物据为己有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依法给予记大过、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　　**第六十四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利用行政强制权为单位或者个人谋取利益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六十五条**　违反本法规定，金融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金融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在冻结前向当事人泄露信息的；　　（二）对应当立即冻结、划拨的存款、汇款不冻结或者不划拨，致使存款、汇款转移的；　　（三）将不应当冻结、划拨的存款、汇款予以冻结或者划拨的；　　（四）未及时解除冻结存款、汇款的。　　**第六十六条**　违反本法规定，金融机构将款项划入国库或者财政专户以外的其他账户的，由金融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并处以违法划拨款项二倍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违反本法规定，行政机关、人民法院指令金融机构将款项划入国库或者财政专户以外的其他账户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六十七条**　人民法院及其工作人员在强制执行中有违法行为或者扩大强制执行范围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六十八条**　违反本法规定，给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造成损失的，依法给予赔偿。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章　附 则**　　**第六十九条**　本法中十日以内期限的规定是指工作日，不含法定节假日。　　**第七十条**　法律、行政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在法定授权范围内，以自己的名义实施行政强制，适用本法有关行政机关的规定。　　**第七十一条**　本法自2012年1月1日起施行。 |